

2026년 제3회 의왕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3회 의왕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의왕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정책지원관 (의왕시의회)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 연구단체 및 의원정책개발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내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 4
-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자격: 아래 【직무기술서】 참고 (※ 미충족시 응시불가)

응시분야	임용예정 직급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1명

주요 업무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 연구단체 및 의원정책개발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판단력,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지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입법·정책활동 지원 능력, 전략적 사고력
-------	--

필요 지식	○ 지방자치, 조례 입법 등 의회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 ○ 지방의회 및 입법·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 등
-------	---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행정, 사회복지, 법무, 예산, 회계, 감사, 사회조사, 정책개발분석, 입법지원, 시설분야(도시계획, 도시재생, 토목, 건축 등) 관련 실무경력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공통사항】

- 자격인정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	(해당 없음)
------	---------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자격 검증 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전임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주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예시) 근무기간 2025.1.1.~12.31.(주 20시간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6개월'로 경력인정
-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 학위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
-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서면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력(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단순활동 등)은 산정 제외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시험 평정요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
2.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7.(월) ~ 9. 9.(수), 3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대리 접수 가능)

-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1층)
- 응시수수료: **【7급(다급) 7,000원 상당의 의왕시 수입증지】**

※ 채용담당자에게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응시원서 제출 전 의왕시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날인(방문접수자)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3회 의왕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 접수자에 한해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주소: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6.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응시원서 접수	2026. 9. 7.(월) ~ 9. 9.(수), 3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9. 15.(화) 전후
면접시험	2026. 9. 18.(금) 전후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uiwang.go.kr>) [공지사항] 란에 공고(개별통보하지 않으니, 시험일자 등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7.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 수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5호에 따라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7급(상당)	연 70,782천원	연 50,272천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 영리업무의 금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외의 영리·비영리업무 겸직을 희망할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이력서 1부 <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

마. 응시자 경력사항 기술서 1부 <서식 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서식 6>

사.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7, 8>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대학원 수료 이상 학력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상 실제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운행차량 종류(인승)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주당 근무시간 명시, 근무시간 산출이 불분명하여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개별적 사유로 경력 입증이 어려울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기관의 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9>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

카.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최종합격 후 원본 확인)

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제출한 경력 내용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급여입금내역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인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 양면 인쇄 금지,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서류 및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반환요청 시 반환해 드리며, 경력·기재된 내용·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의왕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가 없고, 의왕시의회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결격사유,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방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아. 동일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가 선발될 경우 기존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신규 임용처리되는 것으로, 임용 요청 2주 전까지 면직 처리 등을 완료하여 지체 없이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uiwang.go.kr>) 공지사항에 공고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절차 및 시험문의: 의회사무과 의정팀(☎ 031-345-2523)